

1조: 목적

수도 차단 보호법(Cal. Health & Safety Code § § 116900 - 116926)에 따라 리틀록 크리크 관계지역은 비급여인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특정 절차가 포함된 서면 정책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최소 육십(60) 일 이상 연체된다면 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조: 정책 설명

주거용 수도 서비스 계좌에서 육십(60) 일 이상 연체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수도 차단 보호법에 따라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현재 체납 계좌를 알려주며 미납으로 인해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 고객에게 알려주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 본 정책이 다른 지역 법률, 규제, 정책과 상충하는 경우, 이 정책을 우선합니다. 본 정책은 비주거용 수도 서비스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조: 결제 약정

고객은 해제 통지를 받은 후에만 계좌 지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단독 재량으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해제 통지의 최종 마감일 이후 칠(7) 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미지급 어음이 4개 이상인 계좌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제 통지가 도착한 다음 고객은 분할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해당 지역 단독 재량으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 일정에서는 십이(12) 개월 안에 연체한 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 제 3조에 따라 연장이나 납부 일정을 교부받은 고객이 연장한 날짜나 납부 일정에서 정한 날짜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지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특별한 의료 및 재정 상황.

A. 조건

다음 세(3)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1. 면허를 지닌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수도 요금을 연체한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에게 수도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증명서를 해당 지역에 제출한 경우에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고객은 지역의 일반 청구 주기 안에 거주 서비스를 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구 주기에 금전적인 결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a. 고객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현재 CalWORKs, CalFresh, general assistance, Medi-Cal, California SSI/SSP, 여성 및 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 보충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경우.
 - b. 위증 벌금 하에 고객이 연방 빈곤 수준의 이백 퍼센트(200%) 미만임을 신고한 경우. 고객이 신고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3. 고객이 연체한 요금에 대하여 연장, 기타 납부 일정에 해당 지역과 서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계약서에 명시한 납부 일정의 이용 약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서면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연장은 십이(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자격 검증에 대한 고객 증명 및 지역의 검토

고객은 4.A조에 있는 자격 요건에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서류를 받은 지역은 칠(7) 일 안에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a) 지역에서 선택한 이용 약관을 고객에게 알리고 해당 납부 일정 계약서에 고객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b)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c) 고객이 자격에 충족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C. 미준수

4조에 따라 납부 계약을 승인받지 못한 고객이 육십(60) 일이 지나도록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i) 납부 일정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ii) 납부 일정이 유효한 동안 현재의 수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합니다. 서비스 중단 최소 오(5) 영업일 전에 해당 지역은 서비스 주소지에서 눈에 잘 띄고 잘 보이는 위치에 서비스 중단 최종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5조에 따라 최종 통지는 고객이 지역에서 조사나 검토를 받을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5조: 청구서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이의 제기 절차

A. 청구서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이의 제기 절차.

수도 요금 청구서가 정확한지 의심된다면 진술 고객은 분쟁 청구서를 받고 십(10) 일 안에 이의 제기를 시작하거나 청구 금액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이의 제기에는 이를 지지하는 정보나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무 관리자나 회계 관리자는 모든 이의 제기와 조사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에는 고객이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후불 결제나 분할 납부 일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포함됩니다. 조사, 이의 제기가 계류 중이거나 항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 단독 재량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의 제거나 조사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의 제거나 요청은 항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B. 재무부 항소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회계 관리나 재무 관리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재무 책임자의 결정 십(10) 일 안에 재무 이사회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출한 다음에 이사회는 항소 관련하여 십(10) 일 안에 항소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위원회 서면 답변에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답변을 받은 날에서 십(10) 일 안에 위원회에 회의를 요청하여 답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회의 후 위원회는 십(10) 일 안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6조: 지역 연락처 정보

요금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피하고자, 그리고 그 외 다른 사유로 수도 청구서와 관련된 질문과 도움이 있다면 일반 업무 시간에 661-944-2015나 lortiz@lrcid.com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7 a.m.에서 5:30 p.m.입니다. 금요일과 그 외 휴일에는 휴무입니다.